

『4대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』 운영

□ (추진 배경)

- 소규모 영세 사업장(10인 미만)의 4대 기초 노동질서* 확립을 위해 '22년 정기감독의 일환으로 실시

*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, ②임금명세서 교부, ③최저임금 지급, ④임금체불 예방

□ (운영 방향)

-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기본적 법 위반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'22년 정기감독의 일환으로 실시

- 사전 계도(온라인 콘텐츠 교육+자가진단) 후 일제 현장점검 실시*

* 연중 4회(매분기 마지막달 넷째주), 전국 일제 점검 실시

- (감독 기간) 매분기 마지막달 넷째주*를 소규모 사업장 「현장 예방 점검의 날」로 선정, 해당 주간 중 실시(연중 4회)
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감독기간	(홍보) 3.28.~4.17. (점검) 4.18.~ 22.	6.20.~ 24.	9.19.~ 23.	10.31.~ 11.4.

* 1분기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독점검 일정 조정

- (감독 범위)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14조에 따라 감독 실시일 전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4대 기초질서* 관련 사항

*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, ② 임금명세서 교부, ③ 최저임금 지급, ④ 임금체불 예방

- (후속 조치) 영세·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고, 충실한 시정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권리 구제에 중점을 두기 위해 충분한 시정기한 부여